

제정 : 2022.04.26.

개정 : 2023.11.08. 2026.03.26



이사회 운영규정

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(사내이사, 독립이사, 기타비상무이사)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에 의장은 독립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.
- ②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 회 개최한다. 단, 필요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안건의 추인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

제 11 조(부의사항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 (상법 제 362 조)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 (상법 제 447 조의 2)
- (3) 재무제표의 승인 (상법 제 447 조)
- (4) 정관의 변경 (상법 제 433 조)
- (5) 자본의 감소 (상법 제 438 조)
- (6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(상법 제 360 조의 16, 제 517 조, 제 522 조, 제 530 조의 2, 제 519 조)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(상법 제 374 조)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(상법 제 374 조)
- (9) 이사의 선임 및 해임 (상법 제 382 조, 제 385 조)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(상법 제 417 조)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(상법 제 400 조)
- (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(상법 제 340 조의 2, 제 542 조의 3)
- (14) 이사의 보수 (상법 제 388 조, 제 415 조)
- (15) 법정준비금의 감액 (상법 제 461 조의 2)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(상법 제 542 조의 9)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,
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- (6) 이사회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(7) (삭 제)
- (8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9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(상법 제 393 조 제 1 항)
- (11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
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(상법 제 527 조의 2,3, 상법 제 530 조의 11)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(상법 제 526 조 제 3 항, 제 527 조 제 4 항)
- (13) 비재무 리스크(ESG)의 검토
- (14) 준법통제체계에 대한 점검 및 운용 감독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
- (2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모집
- (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4) 전환사채의 발행
- (5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6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7) 자기주식의 소각
- (8) 결손의 처분
- (9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10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11) 대규모의 자금 도입 및 보증 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* (9)~(12)항의 중요성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공시규정에 의거한 기준을 말한다.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(상법 제 398 조)
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(상법 제 397 조의 2)
- (3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(상법 제 397 조)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 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5 조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경영관리부문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재무팀장은 경영관리부문을 보좌하여 이사회 운영을 지원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4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11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 4 조, 제 5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 부터 시행한다.